

의안 번호	회의 자수	회의 일자	제안자
17	4	1978. 2. 16	홍재 김성환

위안: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 취급 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1.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 취급 규정"을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2. 실시 일자: 1978. 2. 20

제안한 법규 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조

제의취지: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 제도의 활용을 통한 외국환은행의 대외차입 이윤도 경감 및 당행 보유 외환의 효율적 운용등을 위하여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의 용자대상을 확대하고자 사전 전제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한국은행법 제7조

한국은행에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로 둔다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에 명목의 부채를

정당한 행사하여 한국은행의 명목, 운영, 관리에

관한 재정정책을 한다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정책의 직무를 수행하기

에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한국은행법 제4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업무의 결과로 금융기관이 받은 명목의

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발행에

가. (생략)

나.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수표, 환, 내원, 편지

수증의 생산물에 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에 한한다

다. 바 (생략)

2.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자취부 대출

가. 본조 제1조에 규정하는 신용증권

(이하 생략)

"수출한 어음 담보대출 채권 규정" 일부 개정 (안)

현행	개정
제3조 (용자대상 어음)	제3조 (용자대상 어음)
이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 어음은	① (현행 아 등)
한국은행의 대출금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용자대상이 될수 있는 어음은	
제외 한다	
1. 화환 신용장에 의하여 국내의	1. 화환 신용장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입자가 발행한 가맹부 수출환	수출입자가 발행한 수출환 어음
어음 및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하는 원장출급 수출환 어음	
2. 국내의 수출입자가 발행한	2. 국내의 수출입자가 발행한
무신용장 방식의 만수도 및 지급도	무신용장 방식이 인수도 및 지급도
조건 수출환 어음으로서 수출보통법	조건 수출환 어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어음	
보통에 부속된 어음	

[illegible]